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

- 동물전시업
- 동물위탁관리업
- 동물미용업
- 동물운송업

변경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7일
신청인 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영업장의 명칭(상호)			
영업의 종류		등록번호	
변경 사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영업자의 성명 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		
	영업시설		
	영업장의 주소		
	그 밖의 사항		
변경사유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[] 동물전시업 [] 동물위탁관리업 [] 동물미용업 [] 동물운송업 변경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<p>첨부서류</p>	<p>1. 등록증 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(같은 규칙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)</p>	<p>수수료 영업 변경등록 건별로 1만원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) 3. 자동차등록증(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</p>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

-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등록 내용(영업의 등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 등)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